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59 발의연월일: 2024. 12 3.

발 의 자: 박성훈·김도읍·이헌승

이인선 · 안상훈 · 고동진

김승수 • 박수영 • 이상휘

조배숙 • 백종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기간에 맞춰 국유재산을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84호)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74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_	2	_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번	ㅋ # /# 한 크 웨 - 트 / - 타 글	7 41 11 6	L 7/1 L
84	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	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	2026. 12. 31.
	제19조 및 제21조의2	사용허가등	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